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0일, 김병기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7. 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4.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병기의원)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상황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된 통합지원센터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58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나아정)

(1) 재난 피해자 또는 유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중앙대책본부에서 설치·운영하는 '중앙합동지원센터'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중앙대책본부 차원에서 재난 피해를 통합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각 개정안은 설치·운영 주체를 모두 중앙대책본부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명칭,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하여는 각기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김병기의원안	임호선의원안	백선희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주체	중앙대책본부장			
명칭	통합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지원 대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	
지원 범위	·재난 수습상황 전달 ·사망자·부상자·실종자 신원확인 ·비상물품전달 등	·특별지원 신청 접수 등 특별지원에 관한 업무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 행정처리 ·사망자 신원확인 및 장례절차 지원 ·재난 수습 정보 제공 ·심리 상담 등	·사망자 신원확인 ·비상물품 전달 등

첫째, 명칭과 관련하여 김병기의원안은 ‘통합지원센터’, 임호선의원안은 ‘현장지원센터’, 백선희의원안 및 민형배의원안은 ‘유가족통합지원센터’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역대책본부에서 운영 중인 재난피해자 지원센터가 ‘통합지원센터’의 명칭으로 운영되었던 점과 현행법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명칭을 고려할 때, 중앙대책본부장이 설치·운영하는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에 ‘통합지원센터’가 포함될 경우 명칭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두 차례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에서 ‘중앙합동지원센터’의 명칭으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명칭을 ‘중앙합동지원센터’로 수정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지역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와 구분하기 위해 명칭을 현재 운영 중인 ‘중앙합동지원센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김병기의원안은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 임호선의원안은 ‘특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백선희의원안 및 민형배의원안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음.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복구, 임시주거시설 및 식사 지원 등 직접적인 구호 활동 외에도 금융, 보험, 법률상담, 통역,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사망자가 아닌 피해자 및 사망자의 유가족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재난의 경우에도 통합된 지원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무관하게 피해자 및 유가족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김병기의원안을 중심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셋째, 개정안이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신원확인, 재난수습 상황전달, 비상물품전달, 지원금 신청 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명시된 사항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재난 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신설

현행법은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의무만 규정[1]하고 있을 뿐, 재난피해 회복 지원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재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하고 있는 재난피해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의 회복수준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도 있어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실태조사의 목적에 관한 김병기의원안과 민형배의원안의 차이점 및 자료 요청 권한 신설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실태조사의 목적과 관련하여 김병기의원안은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로, 민형배의원안은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재난의 복구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항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의 목적을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지원'에 국한시키기 보다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자 지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둘째,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난 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는 재난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에 기반한 조사로 실시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마련 후 법정 조사업무로 추진하게 될 경우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관련 자료를 추가 분석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수준의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에 조사대상자의 신원확인, 피해 전후의 경제·사회·보건·심리상황 및 피해지원 내용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조사데이터의 구축·분석·관리 등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전문 기관에서 조사 업무 수행 및 결과 발표를 대행[2]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수정의견: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 서범수)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